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과 평가

김 영 규*

백석대학교

본 논문은 물건 일반,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강학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물건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물적 담보로서 저당물 등을 표기하고 있고 각칙에서 종래보다 물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은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인·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과 의제부동산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이 우리 민법과 달리 모든 무주물에 대해 국가귀속을 규정하는 것, 유치물을 동산에 한정하는 것 등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강학상의 분류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화폐와 관련해서 담보금과 담보금계약을 명시한 것, 불가분물을 대상으로 한 연대채무자 사이의 몫에 대해 평등을 명시한 것은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이 공민의 유희자금을 대상으로 주민자금 동원 이용계약을 도입한 것은 개인의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주제어: 북한 민법, 통일 민법, 물건, 생산수단, 소비품,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경과규정

이 논문은 2025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주저자: 김영규/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E-mail: llkyk@bu.ac.kr

I. 서론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은 이후 1993년¹⁾ 1999년²⁾ 2007년³⁾ 2024년 4차례 개정이 있었다. 이 중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앞의 3차례 개정과 달리 총칙인

일반제도⁴⁾와 각칙인 소유권제도⁵⁾ 및 채권채무제도⁶⁾ 전체에 걸치는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의사표시제도(김영규·이재웅, 2025) 등 민법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중 물건에 관한 규정은 물권의 객체를 다룰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에 있어

- 1) 북한은 1993년 9월 23일 민법을 1차 개정하였다. 북한의 1차 개정 민법에서는 국가, 사회의 이익준중의 원칙(제9조)의 규정이 개정되었다. 특히 북한 민법의 1차 개정에서는 민사관계의 당사자인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과 자연인(공민) 사이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 또는 중재의 절차로 해결됨을 명시하는 제9조 제2항에 대해서 실체법인 민법에 포함되어 있던 절차법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위 규정(제9조 제2항 삭제)을 삭제하였다(김영규, 2008).
- 2) 북한은 1999년 3월 24일 민법을 2차 개정하였다. 북한의 2차 개정 민법에서는 인민의 복리증진원칙(제6조), 민사 관련 조약의 효력(제10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제11조),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의 등록(제12조), 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의 민사법률행위(제21조),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의 취소(제23조), 대리권의 임무(제35조), 공동소유권(제42조), 소유권의 발생기초(제38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제45조),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제51조),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제54조), 계약의 형식(제93조), 인신침해의 손해보상(제248조) 등의 규정이 개정되었다. 특히 북한 민법의 2차 개정에서는 법인등록의 성격을 성립요건으로 명확히 한 점(제12조 제1항), 대리인의 반신의행위에 대해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두에 의한 수권행위의 취소에 대해 본인의 통지의무를 명시한 점(제33조, 제36조), 위자료책임을 새로이 인정하는 점(제248조, 제2항 신설), 공민인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빌리기계약과 무상의 원칙을 삭제한 점(제179조 제2항 삭제) 등의 변모가 있었다(김영규, 2008).
- 3) 북한은 2007년 3월 20일 민법을 3차 개정하였다. 북한의 3차 개정 민법에서는 종래에 각 조문에 제목을 병기하지 않던 것과 달리 3차 개정에서 각 조문에 제목을 덧붙이는 개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물건 중 3차 개정 민법(제94조)에서는 물건 중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덧붙이게 되었다(김영규, 2019).
- 4) 북한은 2024년 2월 6일 민법을 4차 개정하였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의 총칙인 제1편 일반제도는 민법의 기본(제1조-제11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제12조-제37조), 민사법률행위(제38조-제61조), 대리(제62조-제89조), 민사사효(제90조-제102조) 등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일반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공민의 행위능력의 기준을 종래 17세에서 18세로 개정된 점(제27조), 의사표시에 대해서 의사표시의 방식·효력발생·철회 등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한 점(제39조-제41조), 기한부민사법률행위의 규정을 신설한 점(제61조), 무권대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리의 장을 별개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점(제62조-제89조) 등을 들 수 있다.
- 5)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각칙인 물권에 대해서 제2편 소유권제도에서 일반규정(제103조-제115조), 국가소유권(제116조-제126조), 사회협동단체소유권(제127조-제132조), 개인소유권(제133조-제132조) 등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개정 북한 민법이 제3편 채권채무제도의 제3장 담보에서 새로이 규율하는 제2절 저당권(제462조-제475조), 제3절 전당권(제476조-제487조), 제4절 유치권(제488조-제498조) 등의 규정도 물권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물권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선의취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점(제113조-제115조), 물적 담보에 대한 담보물권을 새로이 규율하는 점(제462조-제498조) 등을 들 수 있다.
- 6)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의 채권에 관한 각칙인 제3편 채권채무제도는 일반규정(제141조-제173조), 계약(제174조-제449조), 담보(제450조-제526조), 무임관리와 부당이득(제527조-제539조) 등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개정 북한 민법이 제4편 민사책임에서 명시하는 일반규정(제540조-제567조), 불법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제568조-제574조),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책임(제575조-제586조) 등의 규정도 채권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채권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 전 민법과 달리 팔고사기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변경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점(제264조-제300조), 빌리기계약을 임대계약으로 변경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점(제337조-제360조), 전형계약으로 주민자금동원이용계약을 새로이 신설한 점(제436조-제449조), 인적 담보로서 보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점(제499조-제517조), 보증금으로서 담보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점(제518조-526조), 무임관리를 계약이 아닌 법정 채권발생 원인으로 수정하고 있는 점(제527조-제532조), 일원적으로 다루던 민사책임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으로 이원적으로 규율하는 점(제568조-제574조, 제575조-제586조) 등을 들 수 있다.

서도 중요한 매개요소가 된다.

특히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은 물건에 대해서 개정 전 민법보다 우리 민법상 실정법상 분류와 강학상 분류로 나누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등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사회주의 민법이 물건의 분류로 중시하는 생산수단과 소비품에 대한 규정들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민법의 물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물건 일반(물건과 재산, 생산수단과 소비품),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와 강학상의 분류(특정물과 종류물, 가분물과 불가분물, 용통물과 불용통물 등)를 기준으로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민법에서 남북한 민사법제를 통합함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요소와 그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물건 일반과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1. 물건과 재산

(1)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과 물건·재산

1990년 북한 민법은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인 1964년 러시아 민법(제92조)⁷⁾을 계수하여 소유권인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재산’으로 명시하면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44조, 제53조, 제58조)은 1964년 러시아 민법(제92조, 제93조, 제195조)을 계수하여 공공화된 재산인 ‘생산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소유권 및 사회협동단체소유권과 공공화되지 않은 재산인 ‘소비품’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소유권 모두에서 ‘재산’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었다.⁸⁾

다만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은 무효한 법률행위의 효과(제27조), 민사법률행위취소의 효과(제29조), 임자 없는 물건의 소유권(제52조), 개인소유재산의 반환청구(제62조), 채권채무에서의 값(제69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제147조), 팔고사기계약(제148조), 작업봉사계약(제156조), 보관계약(제169조), 꾸기계약(제221조-제224조) 등에서 권리의 객체나 권리행사의 매개 요소로 ‘물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2)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물건·재산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은 물권의 객체에 대해서 개정 전 민법과 같이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 등의 소유 주체에 따른 각각의 소유권의 객체와 국가소유의 고정재산이용권의 객체 등에 대해서 여전히 ‘재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제51조, 제59조, 제52조, 제126조, 제140조, 제143조, 제263조, 제264조,

7)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인 1964년 러시아 민법(제92조)은 ‘소유권의 내용’에서 “소유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산을 점유, 사용 및 처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구소련의 민법이론은 협의의 재산이 물건이고, 광의의 재산은 물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밖의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Братусь., Садиков, 1982).

8) 1964년 러시아 민법(제93조)은 생산수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해서 “국가소유(전인민소유), 콜호즈 및 그 밖의 협동단체와 그들의 조합체의 소유, 공공단체소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소련의 민법이론은 공공화의 정도 및 목적에 따라 사회주의적 소유의 모습을 나누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Братусь., Садиков, 1982). 1964년 러시아 민법(제105조)은 소비자료를 대상으로 한 개인소유에 대해서 “노동수입 및 예금, 주택과 그 일부, 가내부업경영, 가내경영품 및 가사용품, 개인편의용품”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구소련 민법이론은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불로소득 및 사회와 공공의 이익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Братусь., Садиков, 1982).

제303조, 제322조, 제324조-제325조, 제389조-제394조)은 무효와 취소의 효과, 무주물의 소유권, 개인 소유재산의 반환청구, 채권채무에서의 값(채무대상이 없어졌거나 쓸 수 없게 된 경우의 채권채무관계), 계약의 금지대상, 매매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꾸기계약 등에서 개정 전 민법(제27조, 제29조, 제52조, 제62조, 제69조, 제148조, 제156조, 제166조-제169조, 제221조-제224조)에서 사용하던 ‘물건’의 표기를 관련 규정에서 종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91조, 제293조, 제344조-제360조, 제456조, 제467조, 제480조, 제491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매매계약 임대계약의 대상이나 물적 담보의 객체인 담보물 등에서 ‘물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전제로 하는 관련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는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개정 북한 민법(제291조, 제293조)은 종래의 팔고사기계약의 명칭을 매매계약으로 변경하면서 매매대상이 여러 물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해제권과 수매계약에서 새로이 ‘물건’을 명기하고 있다. 또 개정 북한 민법(제344조-제360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종래의 빌리기계약의 명칭을 임대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임대물의 결합통지에서 ‘물건’을 명기하고 물건을 전제로 한 임대계약의 목적물을 ‘임대물’로 표기하고 있다.

또 개정 북한 민법(제456조, 467조, 제480조, 제491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담보물권인 물적 담보를 새로이 규율하면서 그 객체인 담보물의 처분 범위에서 ‘물건’을 직접 명기하고 있으며, 담보물권인 저장권·전당권·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서 저장물·전당물·유치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물건’을 전제로 표기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윤종철,

2012; 법무부, 2016).⁹⁾

위와 같은 2024년 개정 민법의 변모는 물적 재산권의 객체에 대해서 종래 ‘재산’을 중심으로 다루던 것을 ‘재산’에 버금가게 ‘물건’을 같이 혼용하여 표기하는 과도기적 입법태도로 해석된다. 이는 2024년 개정 전후의 북한 민법이 표기하는 ‘재산’의 중심이 ‘물건’이고 재산은 물건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 있는 것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북한 민법상 ‘재산(財産)’은 ‘재화(財貨)’와 같은 의미로 파악된다.

2007년까지의 3차례의 개정 이후 최근 북한의 민법이론은 ‘물권’에 대해서 여전히 ‘소유권’을 중심으로 규율하면서도 ‘그 밖의 물권’을 아우르는 용어로 ‘물적 재산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적 재산권’의 객체로 ‘재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물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백영훈, 2013; 윤종철, 2012; 한철룡, 2015).¹⁰⁾

따라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의 태도는 종래 ‘소유권제도’에 대해서 ‘소유권 이외의 물권’까지를 포함해서 ‘물권’에 해당하는 ‘물적 재산권’으로 파악하는 변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적 변모라고 생각된다.

2. 생산수단과 소비품

(1)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과 생산수단·소비품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3조, 제44조, 제53조, 제58조)은 1964년 러시아 민법(제93조, 제105조)을 계수해서, 물건을 사회주의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공공화된 재산인 생산수단과 개인소유의 대상이 되는 공공화되지 않은 재산인 소비품으로 분류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1990년 제정된 이후 1999년의 2

9)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의 전당권은 우리 민법의 동산질권과 유사한 것으로 개정 전 북한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미리 전당물을 담보로 잡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잡아 둔 전당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10) 2012년 이후 북한의 민법 교과서나 논문에서는 민사법률관계의 대상 또는 물적 재산권의 객체로 종래의 재산이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두드러지게 물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물건의 분류를 나누고 있다.

차 개정(국가소유권의 대상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과 가정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에 대해 개정)¹¹⁾과 2007년의 3차 개정(국가소유재산의 살림집 이용권에 대한 개정)¹²⁾에서 물권제도에 다소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수단을 사회주의적 소유의 대상으로, 소비품을 개인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생산수단·소비품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조, 제116조, 제127조, 제133조)은 개정 전 민법(제3조, 제44조, 제53조, 제58조)과 같이 소유 주체의 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 생산수단과 개인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소비품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66조)은 개정

전 민법에서 팔고사기계약의 이름을 매매계약으로 개칭하면서 매매계약의 대상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나누어 당사자의 자격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개정 민법(제266조)은 ‘기계, 설비, 운전(輪轉) 기계, 건물’과 같은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법인들 사이에서만 매매의 대상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소비품이나 이에 준하는 유통이 승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과 공민 사이나 공민들 사이에서만 매매의 대상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40조-제341조)은 개정 전 민법에서 빌리기계약의 이름을 임대계약으로 개칭하면서 임대계약의 대상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나누어 당사자의 자격과 유상성 여부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개정 전 민법(제179조)은 빌리기계약의 대상을 생산수단이 아닌 소비품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¹³⁾ 개정 민법(제340조)

11) 1993년 개정된 북한 민법은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제50조)의 규정 중 국가소유의 대상과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의 대상과 가정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에 대해 개정하고 있다. 먼저 국가소유권의 대상의 대상에 대해서 1990년 북한 민법(제45조)은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주요 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제작소, 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리 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 도시경영, 중요 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개정 북한 민법(제45조)은 제45조 제2호와 제3호에 대해서. “2.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3.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보건의시설”로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의 대상에 대해서 1990년 북한 민법(제54조)은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와 문화보건의시설,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7년 개정 북한 민법(제54조)은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또 가정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에 대해서 1990년 북한 민법(제61조)은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개정 북한 민법(제61조)은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로 개정하였다.

12)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제50조)은 ‘국가소유재산의 살림집이용권’에 대해서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7년 3차 개정된 북한 민법(제50조)은 종래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제50조에 “인민정권기관은 리혼당사자들 사이에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경우 해당 재판소의 판결서등본에 기초하여 살림집리용권자를 새로 정해주어야 한다.”는 제2항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13)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179조)은 ‘빌리기계약의 형식’에서 계약의 대상물을 도서 등 소비품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은 생산수단과 소비품을 모두 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¹⁴⁾

위와 같이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같이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분류하면서 생산수단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이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북한 민법이 갖는 내재적 한계이다.

3. 통일 민법에의 수용과 한계

(1) 수용 가능성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 민법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등의 물적 재산권의 객체 등에서 물건과 재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1964년 러시아 민법(제92조)이 소유권의 객체를 해석하는 구소련 민법이론에 터잡는 것으로서 ‘협의의 재산’을 ‘물건’으로 칭하고, ‘물건을 포함하여 각종의 재화’에 대하여 ‘광의의 재산’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개정 민법은 ‘재산’이라는 표기보다는 ‘물건’이라는 용어를 종래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물권의 객체가 원칙적으로 물건이고, 물건 이외의 재화에 대해 재산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입법 방향을 예측하게 하며,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는 태도로 파악된다. 또 개정 민법은 종래 북한 민법이 소유권을 중심으로 물권을 다루던 태도에서 벗어나 담보물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함해서 물적

재산권으로 다루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정 전보다 남북한 민사법제 통합을 위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2) 수용의 한계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조, 제104조, 제116조, 제127조, 제133조)은 개정 전 민법(제3조)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유 주체에 따라 소유의 모습을 구별한다. 더욱이 2024년 개정 민법(제2조)은 개정 전 민법(제266조, 제340조)과 달리 매매계약과 임대계약의 대상과 당사자의 지위에 있어서 생산수단과 소비품을 나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법인을 당사자로 하고 소비품에 대해서는 공민을 당사자로 제한한다.

이처럼 2024년 개정 민법(제2조, 제104조, 제116조, 제127조, 제133조)의 규정이 여전히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유 및 물권의 본질에 대해서 여전히 생산수단을 착취의 기초로 간주하여 사회주의적 소유의 특별보호의 원칙을 견지하는 태도이다(한철룡, 2013).¹⁵⁾ 이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¹⁶⁾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수용할 수 없는 한계이다. 따라서 개정 민법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관련 규정들은 통일 민법에서 모두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14)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179조)은 ‘임대계약의 대상’에서 “임대계약의 대상에는 설비, 료전기재, 건물과 도서, 생활용품, 문화오락기구와 같은 재산이 속한다.”고 규정하여 도서 등의 소비품은 물론이고, 건물 등의 생산수단도 임대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15) 북한의 민법이론은 물권의 기초에 대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어 인간의 착취를 없애고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철폐에 두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유와 물권의 본질은 착취와 사회계급적 성격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차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 그 구체적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사유재산권의 존중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III.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1. 동산과 부동산

(1)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과 동산·부동산

북한은 1990년 민법을 제정한 이후 2024년 민법 개정 전까지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동산과 구별되는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다. 즉 개정 전 북한 민법(제86조, 제94조)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변제의 장소는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함과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면과 공증을 받는 것을 효력요건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148조, 제179조)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공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매매인 팔고사기계약과 임대차인 빌리기계약에 대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다.¹⁷⁾

이 밖에 북한의 사회주의 재산관리법과 부동산관리법은 북한 민법이 제정된 이후 입법된 실질적 민

법으로서 물건과 재산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먼저 1990년 북한 민법 제정 후에 입법화된 1996년 북한의 사회주의 재산관리법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¹⁸⁾

또한 북한 민법의 3차 개정 후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제30조)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김영규, 2019).¹⁹⁾ 또 북한 부동산관리법(제30조)은 민법(제148조, 제179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공민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며,²⁰⁾ 이는 부동산의 전매, 교환, 사용대차 등 일체의 재산권 이전계약과 재산권 이용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김영규, 2019).

이 밖에 2010년 이후 최근의 북한의 민법이론은 저당권은 부동산만을 전제로 하고, 전당권이나 유치권은 동산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위 권리들은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백영훈, 2013). 또 개정 전 북한 민법(제51조, 제57조, 제62조)은 국가소유재산·사회협동단체 소유 재산²¹⁾과 달리 개인소유재산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며(법무부 편, 2015),²²⁾ 이에

- 서, 우리 헌법(제4조)의 가치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로 나아감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 민법(제2조, 제104조, 제116조, 제127조, 제133조)의 태도는 결코 상용(相容)할 수 없는 요소이다.
- 17)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148조)은 매매인 팔고사기계약에 대해서 인민들의 소비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맺어야 한다는 규정하여 부동산을 매매의 목적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 개정 전 북한 민법(제177조)은 임대차인 빌리기계약에 대해서 공민이 도서, 특허물, 녹음물, 녹화물 같은 자료를 목적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
- 18) 북한은 재산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앞세워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히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3월 21일에 사회주의 재산관리법(제1조)을 제정하였다(1998년 12월 10일 1차 개정). 위 사회주의 재산관리법(제15조)은, 사회주의 재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 같은 것으로 나눌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19) 북한은 부동산에 대한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납부에서 제도와 질서를 앞세워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히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1월 11일에 사회주의 재산관리법(제1조)을 제정하였다(2011년 12월 21일 1차 개정). 위 부동산관리법(제2조)은, ‘부동산의 구분’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시설물, 자원 같은 것으로 나눌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 이외에 ‘건물, 시설물, 자원’은 우리 민법(제99조 제1항)의 토지의 정착물로 다룰 수 있으므로, 북한 부동산관리법(제2조)의 부동산의 구분은 우리 민법(제99조 제1항)이 부동산을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로 나누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0) 2009년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28조 제6호, 제30조)은 “부동산을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여 부동산 매매를 금지함은 물론이고 매매를 비롯한 부동산의 넘겨주기와 빌려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대해서 최근 북한의 민법이론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²³⁾

또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52조)은, 임자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대해서 우리 민법(제252조)이 무주물선점의 대상으로서의 물건을 동산으로 한정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하는 것과는 달리,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고 모든 무주물은 국가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2)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동산·부동산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 민법과 같이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물건을 동산 및 이에 대응한 부동산으로 나누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03조, 제218조 제3항)은 개정 전 민법(제86조, 제94조)과 같이 동산에 대응하여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채무변제의 장소를 부동산소재지로 하고,²⁴⁾ 부동산거래계약의 요식성²⁵⁾에 대해서 개정 전 민법과 유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91조 제3항)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물적 담보의 유형으로서 유치권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그 목적물인 유치물을 동산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⁶⁾ 그리하여 최근의 북한의 민법이론과 같이 유치물은 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는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법률상의 실익이 된다.

또 개정 북한 민법(제467조)은 물적 담보로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저당물에 대해서 ‘건물, 선박, 운전기계’를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서 ‘선박, 운전기계’를 북한 민법이론은 의제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법률출판사, 2017).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126조)은 개정 전 민법(제52조)과 같이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고 모든 무주물을 국가소유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북한 민법이 소유권 일반에 대한 보호보다는 소유 주체를 나누어 국가소유권을 더욱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법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소유 주체에 따라 소유권을 나누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북한 민법이 갖는 내재적 한계이다.

21)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51조)은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서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 없는 자로부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있다. 또 개정 전 민법(제57조)은 ‘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서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이 권한 없는 자로부터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있다.

22)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62조)은 ‘개인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서 “공민은 자기의 소유의 재산을 권한 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국가소유재산·사회협동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3) 최근의 북한 민법이론은 동산에는 선의취득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만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백영훈, 앞의 글, p. 105). 이는 국가소유재산·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이 부동산이고, 개인소유재산이 동산이라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24)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03조)은 계약의 이행장소와 관련하여 “법이나 계약에서 리행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리행하여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거주지(소재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리행하여야 할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 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거주지(소재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전 민법(제86조)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변제의 장소를 부동산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25)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18조 제3항)은 ‘계약에 대한 공증’에서 개정 전 민법(제94조)과 같이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91조 제3항)은 “유치물로는 동산만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을 유치물에서 배제하고 있다.

2. 주물과 종물

(1)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과 주물·종물

개정 전 북한 민법(제85조)은 주물과 종물에 대해서 주된 물건(재산)과 종속된 물건(재산)이라고 칭하면서, 채권총칙(제3편 채권채무제도의 제1장 일반규정)에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주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하는 ‘처분의 수반성’을 명시하고 있다(법무부 편, 2015).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민법이론은 종속된 물건은 주된 물건의 구성부인이어서는 안되므로 독립성을 띠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종속된 물건은 주된 물건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사회과학연구소, 1997).

(2)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주물·종물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06조)은 개정 전 민법(제85조)과 같이 ‘종속재산의 인도’에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대상을 넘겨주는 경우 따로 합의하지 않은 한 그에 종속된 재산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물의 효과로서 ‘처분의 수반성’을 명시하고 있다.²⁷⁾

그러나 2024년 북한 개정 민법(제290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계약 각칙인 매매에서 ‘종속된 재산이 있는 경우의 계약해제효력’에서 종물의 효과로서의 처분의 수반성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매대상이 계약에서 합의한 것과 맞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에 종속된 재산이 있다면 해제의 효력은 종속된 재산에도 발생한다. 여기서

구매자인 매수인은 종속된 재산이 계약에서 합의한 것과 맞지 않는 경우, 계약을 전부 해제할 수도 있고 종속된 재산에 대하여서만 해제할 수도 있다.

또한 2024년 북한 개정 민법(제456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담보물의 처분범위’에서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물로 정해진 재산이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만일 담보물에 물건이나 권리가 종속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물과 함께 종속된 물건이나 권리도 함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속된 물건인 종물이 주된 물건인 담보물의 처분에 따른 수반성의 효과를 새로이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북한의 개정 민법에서 물적 담보로서 저당권을 새로이 명시하기 전에도 북한의 민법이론은 주된 재산인 소유권에 저당권의 제한이 가하여지면 그 제한은 종된 재산인 저당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백영훈, 2013).²⁸⁾ 이에 따라 개정 민법(제470조)은 ‘저당물처분의 법적 효과’로 “저당물이 양도되어도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물을 처분하여 자기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주물에 대한 물적 담보의 효과가 종물인 저당권에도 미치게 됨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위와 같이 2024년 북한의 개정 민법(제290조, 제456조, 제470조)이 매매와 물적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종물에 대한 처분의 수반성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우리 민법(제100조, 제323조, 제343조, 제358조)의 태도와 상용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서 그 거리를 좁혀주는 요소이다.

27) 다만 북한의 개정 전 민법(제85조)이 ‘채권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04년 북한의 개정 민법(제206조)은 종속재산의 인도에 대한 처분의 수반성의 규정을 ‘계약 총칙’에서 규율하는 다소의 변모를 보이고 있다.

28) 다만 2024년 북한의 개정 민법에 의해서 저당권이 명시되기 전에도 북한은 토지임대법(제21조-제25조)에서 토지이용권을 대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때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함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해석될 수 있었으나, 이는 일반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종물의 처분의 수반성의 모습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3. 원물과 과실

(1)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과 원물·과실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과실을 수득물(修得物)이라고 칭하면서 이에 대해 어떠한 물건(동물, 과일 나무 등)인 원물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적 이득(동물의 새끼, 과일 나무의 과일 등)이 수득물이고, 그 이득물을 낳게 하는 물건을 원물로 이해하면서 분리주의에 따라 수득물이 귀속됨을 강조하고 있다(백영훈, 2013;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97). 이에 따라 개정 전 북한 민법(제236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한 원물로부터 비롯된 수익은 분리주의에 따라 부당수익자가 아닌 손실자에 귀속되게 된다.

(2)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원물·과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36조)은 개정 전 민법(제236조)과 같이 ‘부당이득의 반환시기’에서 부당이득자에 대해서 부당이득한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인 수득물에 대해서도 손실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부당이득자는 이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거나 응당 알았어야 할 때부터 부당이득과 함께 그로부터 생긴 재산인 수득물인 과실을 손해를 입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80조 제2항, 제493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담보물인 원물로부터 비롯된 과실에 대해서 담보물과 함께 채권실현을 위해 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80조 제2항)은 ‘전당물과 수득물’에서 “전당권자는 전당물로부터 수득물이 생기면 보관하였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득물을 전당물과 함께 자기의 채권실현에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당권에게 과실의 귀속을 명시하고 있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제493조)은 ‘유치물의 수득물처리’와 관련해서 “채권자는 유치물과 함께 그 수득물도 유치한다.”고 규정하여 담보권자인 유치권자에게 과실의 귀속을 명시하고 있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3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물로부터 비롯된 과실의 귀속권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즉 개정 북한 민법(제353조)은 “임대기간 안에 임대물을 리용하는 것으로 하여 얻는 수익은 임차자가 소유한다.”고 규정하여 임대물인 원물로 인한 과실인 수익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용권자인 임차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24년 북한의 개정 민법이 종래와 달리 담보권자(전당권자, 유치권자)와 이용권자(임차자)에게 과실인 수득물의 귀속을 명시하는 것은 분리주의를 명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4.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과 한계

(1) 수용 가능한 요소

2024년 북한 민법(제480조 제2항, 제353조)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수득물이 과실의 귀속과 관련해서 임대계약의 임차자에게 임대물의 수익권을 명시하는 것과 물적 담보를 새로이 규율하면서 담보권자인 저당권 및 유치권자에게 담보를 위하여 담보물로부터 비롯된 과실의 귀속을 명시하는 것은 우리 민법(제100조, 제323조, 제343조, 제358조, 제618조)의 태도와 같은 것으로서 남북한 민사법제의 접근을 높여주는 것인 동시에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로 평가된다.

또 북한 민법(제236조)이 부당이득으로부터 수익자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선의와 악의로 나누어 악의인 경우에는 원물로부터 비롯된 과실로 이해하여 분리주의에 따라 귀속권자인 손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민법(제748조)의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요소이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건물과 함께 선박 등의 의제부동산을 저당물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 민법과 같은 태도로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2) 수용의 한계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126조)은 개정 전 민법(제52조)과 같이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고 모든 무주물을 국가소유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는 여전히 북한 민법이 소유권 일반에 대한 보호보다는 소유 주체를 구별하면서 국가소유권을 더욱 특별히 보호하는 법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²⁹⁾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다. 따라서 개정 북한 민법(제126조)의 위 규정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91조 제3항)이 우리 민법(제320조)과 달리 유치물을 동산에 한정하는 것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북한 민법의 단순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민법상 접근의 한계점으로 통일 민법에서 폐기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IV. 우리 민법상 물건의 강학상의 분류와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1. 특정물과 종류물

(1)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과 특정물·종류물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82조, 제83조, 제84조)은 ‘특정물’을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이라 칭하고

‘종류물’을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칭하면서 채무이행에서의 목적물의 품질, 특정물이 없어졌거나 쓸 수 없게 된 경우의 채권채무, 종류물의 특정물로서의 전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민법(제82조)은, 종류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종류물의 품질에 대하여 무상행위인 경우에만 중등품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유상행위인 경우)에는 상등품을 기준으로 이행하도록 다루고 있다.

또 개정 전 민법(제83조)에 따르면, 채무대상이 된 물건이 없어지거나 쓸모없게 되면 채무는 없어진 경우, 특정물채무에서는 인도해야 할 물건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 있는 자가 그에 다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종류물채무에서는 다른 종류물로 인도해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 개정 전 민법(제84조)은 종류물채권에 대해서 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면’ 그 때부터 종류물채권은 특정에 의하여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됨을 규정하고 있었다.

(2)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특정물·종류물

2024년 북한 개정 민법(제143조, 제144조)은 개정 전 민법(제83조, 제84조)과 같이 물건에 대해서 특정물·종류물을 기준으로 ‘채무대상이 없어졌거나 쓸 수 없게 된 경우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특정물과 종류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종류물의 특정에 의한 특정물로서의 전환 규정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개정 전 민법(제82조)이 채권 총칙(제3편 제1장)에서 특정물과 종류물로 나누어 변제에서의 목적물의 품질에 대해서 규율하던 것과 달리 2024년

29) 북한의 사회주의재산관리법(제57조)은 “임자 없는 재산, 몰수한 재산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재산을 정해진 데 따라 처리하고 값을 받았을 경우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주물에 대한 국가귀속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개정 민법(제205조)은 채권 각칙인 계약 총칙(제3편 제2장 제1절)에서 ‘계약대상의 품질’에서 특정물·종류물의 구분 없이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 북한 민법(제205조)은 특정물·종류물의 구분 없이 계약당사자들은 법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법이나 계약에서 품질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류물의 품질에 대해서 무상행위의 경우에만 중등품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상등품을 이행하도록 하던 개정 전 민법의 태도에 일부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개정 민법(제205조)이 채권관계에서 계획과제의 정확한 수행에 치중하던 종래의 태도(법무부, 2015)에서 재산관계의 합리화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입법으로 보인다.

2. 가분물과 불가분물

(1)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과 가분물·불가분물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은 가분물·불가분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가분물에 대해서 용도·가치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라 칭하고,

불가분물에 대해서 성질상 분할할 수 없으며 분할하면 용도·가치에 손상을 주는 물건이라 칭하고 있다(백영훈, 2013). 이에 따라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43조, 제71조, 제73조)도 가분물·불가분물과 관련해서 공동소유재산의 분할, 분할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 연대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민법(제43조 제1항)은, 공동소유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1964년 러시아 민법(121조)³⁰⁾을 계수하여 가분물로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분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대금분할을 하도록 취급하고 있다(백영훈, 2013).³¹⁾

또 개정 전 민법(제72조)은, 가분물을 전체로 한 ‘분할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³²⁾ 다만 분할채권자들 중 법인과 공민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지위가 우선된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97; 법무부, 2015; 김영규, 2018).

또 개정 전 민법(제73조)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수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불가분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의 불가분채권채무에 해당하는 연대채권채무로 명시하고 있으며,³³⁾ 여기서 연대채권채무관계는 공민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사회주의적 조직인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는 적용

30) 북한의 개정 전 민법(제43조)이 공동소유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대금분할을 다루는 태도는 우리 민법(제269조 제2항)의 태도와 유사하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인 1964년 러시아 민법(제121조)의 태도를 계수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64년 러시아 민법은 ‘공동재산의 지분 분할’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각 공유자는 공동재산상의 자기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유자의 소송에 의하여 그 공유재산의 경제적 목적에 비추어 크게 해가 없는 한 재산은 분할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신 금전보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북한의 민법이론은 현물분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대금분할 이외에 값을 정하여 비교적 큰 자가 다른 공동소유자들에게 그 지분 상당액을 보상하는 방법인 가격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2) 북한의 개정 전 민법(제71조)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수인 채권채무관계에서 가분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이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들은 자기 몫의 채무만을 이행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북한의 개정 전 민법(제73조)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수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불가분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경우, 연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연대채무자들은 저마다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상 불가분채권채무와 연대채권채무를 구별하지 않는 모호성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민법의 불가분채권채무에 해당하는 관계를 연대채권채무로 명시하고 있다.

되지 않는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97; 법무부, 2015; 김영규, 2018).

(2)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가분물·불가분물

2024년 북한 개정 민법(제110조, 제147조, 제149조)은 개정 전 민법(제43조, 제71조, 제73조)과 같이 물건에 대해서 가분물·불가분물을 기준으로 공동 소유재산의 분할, 분할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 연대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 등의 규정을 같은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 북한 민법과 같이 불가분채권채무와 연대채권채무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연대채권채무관계를 우리 민법상 불가분채권채무의 성격을 띠는 관계로 규율하는 단 순성을 띠고 있다.

다만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149조 제1항, 제151조 제3항)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별도의 규정 없이 종래 통설에서 다루던 연대채권채무의 발생원 인과 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인 몫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즉 개정 북한 민법(제149조 제1항)은 법에서 규정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몫을 가르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근거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³⁴⁾ 또 개정 북한 민법(제151조 제3항)은 연

대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각자의 몫 이 명백치 않은 경우에는 몫이 같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새로이 명시하였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법무부, 2015).³⁵⁾

위와 같이 2024년 북한 민법(제151조 제3항)이 종래와 달리 연대채권채무자 사이의 몫에 대해서 평등을 명시하는 것은 재산관계의 합리화와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제110조, 제147조, 제149조)에서도 개정 전 민법(제72조, 제73조)과 같이 불가분물을 대상으로 한 연대채권채무관계에서 가분물을 대상으로 한 분할채권채무관계로 나누어지고 북한 민법상 분할채권자들 중 법인과 공민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지위가 우선시되고, 연대채권채무 관계는 공민들 사에서만 적용되고 사회주의적 조직인 법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 입법태도로 평가된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97).³⁶⁾

3. 그 밖의 강학상의 분류

(1) 용통물과 불용통물

1)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과 용통물·불용통물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147조)은 ‘계약을 채

34) 1964년 러시아(제180조)을 근거로 연대채권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몫을 가르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로 이해하고 있던 것을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149조 제1항)은 명시하고 있다. 즉 1964년 러시아(제180조)은 ‘연대채무’에서 “연대적 채권 또는 연대적 채무는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발생하며, 특히 채권채무 목적이 불가분인 경우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5)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도 1964년 러시아(제181조 제2항)을 근거로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대해서 서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평등한 비율이 원칙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1964년 러시아(제181조 제2항)은 ‘연대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대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행을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써 역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동 채무자들 중 1인에 의하여 연대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부분은 동등한 비율로 연대의무를 이행한 채무자 및 나머지 공동 채무자들에게 동등한 비율로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6)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개정 전 민법은 모두 분할채권자들 중 공민과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지위가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키고 있으며 분할채권자들 사이에 공민과 사회주의적 조직(기관, 기업소, 단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주의적 조직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앞의 책, p. 311), 이러한 법리는 개정 민법에서도 계속 다루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결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회유금속, 그 밖의 국가통제품을 열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북한 민법(제147조)이 열거하는 위 물건들에 대해서 북한의 민법이론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용통물에 대해서 비유통물로 다루고 있다(윤종철, 201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김영규, 2018).³⁷⁾

그러므로 개정 전 반대해석에 따라 북한 민법(제147조)에서 열거되지 않은 보통의 물건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통물인 유통물이 된다.

2)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유통물·불용통물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64조)은 불용통물(비유통물)에 대해 '계약의 금지대상'에서 "국가가 거래를 금지시킨 통제품 같은 물건과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정 민법상 불용통물은 '국가가 거래를 금지시킨 통제품 같은 물건'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에 는 국가가 거래를 금지시킨 '통제품'과 통제품과 같이 '통제품에 준하는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민법(제264조)의 '통제품'의 범위에는 개정 전 민법이 통제품(제147조)으로 열거하고 있던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 '회유금속', '그 밖의 국가통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개정 민법(제264조)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명시하는 '통제품과 같은 물건'은, 종래 북한 민법 이론이 통제품에 준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었을 때 무효로 다루는 물건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에 입법 취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백영훈, 201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김영규, 2018).³⁸⁾ 이에 따라 개정 북한 민법(제266조 제2항, 제340조 제342조)에서 개정 전 민법과 달리 공민 사이에 매매의 대상으로 금지시키는 생산수단(기계, 설비, 운전기재, 건물과 같은 생산수단), 임대 대상의 대상으로 금지시키는 생산수단, 공민 사이에 임대계약에서 금지시키는 차임³⁹⁾ 등은 '통제품과 같은 물건'인 불용통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2004년 개정 북한 민법(제264조)의 불용통물(비유통물)에는 금·은 등의 회유금속이나 사회주의적 소유로서 개인소유가 금지되는 토지·건물 등의 생산수단도 개인 사이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 포함되므로, 위에 열거한 것들을 유통물로 다루는 우리 민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 특수한 물건으로서의 화폐

1)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과 화폐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184조, 제200조, 제210조, 제229조, 제243조 제4호)은 빌리기계약에서 보증금, 저금계약에서 저금,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은행대부계약에서 대부금, 민사책임형태에서 위약금과 제재금 등을 명시하면서 물건 중 '화폐'를 명

37) 북한의 민법이론은 개정 전 북한 민법(제147조)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인 비유통물과 관련하여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총기류와 같이 승인받은 특정인만이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을 뜻하고, '회유금속'은 금 등 국가기관 이외의 개인 사이에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을 뜻하며, '그 밖의 국가통제품'은 유물이나 마약 등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38) 북한의 민법이론은 생산수단으로 국가의 전속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생산수단이나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꼭기계약의 이자 등과 같이 불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개정 전 민법(제147조)의 통제품에 준하여 불용통물(비유통물)로 이해하고 있다.

39)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제179조 제2항)은 공민들 사이의 빌리기계약에서는 사용료를 주고받을 수 없도록 차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가 1999년 2차 개정시에 위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2024년 개정 민법(제342조)에서 다시 공민들 사이의 임대계약은 무상으로 체결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정 민법상 임대계약에서 이자는 금지되는 불용통물이다.

시하고 있다.

여기서 화폐에 대해서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화폐'는 종류물에 속하나 보통의 종류물과 달리 등가물이고 가치척도 및 지불의 수단이 되고 '화폐가 아닌 물건'과 다른 특징을 띠는 특수한 물건임을 강조하고 있다(백영훈, 2013; 김영규, 2018). 즉 북한의 민법이론에 의하면 화폐는 점유와 소유권이 일치되는 물건으로서 화폐의 점유자는 곧 소유권자가 되는 점, 화폐는 특정물이 아닌 종류물로서 그 침탈시에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이나 부당이득·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점, 화폐를 대상으로 한 권리 이전의 실체는 사용권이 아닌 소유권이 아닌 점,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통화로 할 수 없는 점 등의 특징을 띤다.

2)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화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79조, 제397조, 제421조, 제546조 제4호 및 제550조)은 화폐에 대해서 개정 전 민법(제200조, 제210조, 제229조, 제243조 제4호)과 같이 저금계약에서 저금(화폐자금),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은행대부계약에서 대부금(화폐자금), 민사책임형태에서 위약금과 제재금 등을 명시하면서 물건 중 '화폐'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60조)은 개정 전 민법(제184조)의 '보증금을 설정한 빌리기계약'에서 규율하던 계약 종료시의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에 대해서 '담보금을 설정

한 임대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즉 개정 민법(제360조)은 개정 전 민법(제184조)과 달리 전형계약의 명칭을 '빌리기계약'에서 '임대계약'으로 수정하고 '보증금'을 '담보금'으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계약 종료시의 담보금의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50조-제526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제3편 채권채무제도의 제3장에서 '담보'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면서⁴⁰⁾ 그 제6절에서 임대계약 등에서 다루어지는 '담보금'에 대한 일반규정을 새로이 규율하고 있다.⁴¹⁾

또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36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전형계약으로서 '주민자금 동원이용계약'을 신설하면서 화폐로서 공민의 자금이 위 계약의 필수요소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개정 북한 민법(제436조-제449조)은 주민자금을 이용하는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이 유희 화폐자금을 법인에 동원시키는 자금동원자 사이에 공민의 자금을 이용하고 계약한 날자에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으로 '주민자금 동원이용계약'에 대해서 새로이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들은 화폐 이름과 금액, 이용기간, 원금상환 및 이자 지불방식, 이자율, 담보 등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원금과 이자는 화폐인 물건이다. 이는 북한의 개정 민법이 우리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은행대부계약과 우리 민법상 금전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하는 저금계약 이외에 새로이 금전을 요소로 한 계약의 모습을 띤다. 위 계약은 개정 북한 민법이 공민의 유희자금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적 조직(기업, 기업소, 단체)이 그

40)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50조)은 제3편 채권채무제도의 제3장에서 '담보'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면서 제1절 일반규정(제450조-제461조)과 물적 담보로서의 제2절 저당(제462조-제475조), 제3절 전당(제476조-제487조), 제4절 류치(제488조-제498조), 제6절 담보금(제518조-제526조)와 신용담보로서 제5절 보증(제499조-제517조)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41)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18조-제526조)은 제3편 제3장 제6절에서 '담보금'에 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면서 담보금의 정의, 담보금의 설정, 담보금관계의 성립시점, 담보금의 지불, 담보금의 지불시점, 담보금의 최고한도, 지불한 담보금의 인정, 담보금의 처리, 위약금조항과 담보금조항이 병존하는 경우의 선택권 등에 대해서 새로이 규율하고 있다.

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권이용계약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북한 민법(제3조, 제7조)의 ‘국가와 사회의 이익 우선 보장원칙’과 ‘협력과 방조의 원칙’에 의하여 개인의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내재적 한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통일 민법예의 수용과 한계

(1) 수용 가능성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05조)은 종래 북한 민법(제82조)이 정확한 계획과제의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물과 종류물을 나누어 변제시에 목적물의 품질에 대해 상등품을 기준으로 하고 무상행위인 경우에는 중등품을 기준으로 규율하던 종래의 태도(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법무부, 2015).⁴²⁾를 변경하여 재산관계의 합리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즉 북한 개정 민법(제205조)은 종래와 달리 특정물·종류물의 구분 없이 법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등품·중등품·하등품이 모두 품질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중등품을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과제의 수행보다는 이해타산에 맞도록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래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18조, 제520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계약 등의 매개가 되는 보증금인 담보금에 대해서 정의규정을 통해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담보금계약인 종된 계약의 성격을 요물계약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법의

통설(곽윤직, 2018; 김영규, 2020; 송덕수, 2020; 양형우, 2022)⁴³⁾·판례⁴⁴⁾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18조, 제520조)의 담보금에 관한 위 규정은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그 접근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통일 민법예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151조 제3항)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연대채권채무의 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몫)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법의 통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수용가능한 요소이다.

(2) 수용의 한계

개정 북한 민법(제110조, 제147조, 제149조)이 개정 전 민법(제72조, 제73조)과 같이 가분물을 대상으로 한 분할채권채무관계에서 분할채권자들 중 법인과 공민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하고, 불가분물을 대상으로 한 연대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 법인이 아닌 공민들 사이에서만 적용하는 것은 민사관계에서 자연인인 공민보다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36조-제449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주민자금 동원이용계약을 신종 전형계약으로 신설하면서 계약의 요소로서 화폐에 해당하는 공민의 자금과 그 요소라고 명시한다. 이는 공민의 유희자금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적 조직(기업, 기업소, 단체)이 그 자금을 이용하면서 북한 민법(제3조, 제7조)의 기본원리로서 국가와 사회의

42) 북한의 민법이론은 개정 전 북한 민법(제82조)의 태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과제의 수행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3) 우리 민법의 통설은 보증금의 성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임대차에서 발생한 차임의 부지급이나 임대물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4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동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이익이나 집단주의를 앞세우게 되면 국민의 유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 ‘주민자금 동원이용계약’에서는 이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국민 개인의 지위가 침해될 수 있는 한계를 갖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정 북한 민법(제436조-제449조)이 신설한 주민자금 동원 이용계약과 그 매개 요소가 되는 화폐(자금인 원금과 이자) 관련 규정은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한계이다.

또 2004년 개정 북한 민법(제264조)이 개인 사이의 거래가 금지되는 비유통물의 대상에 금·은 등의 희유금속이나 개인소유가 금지되는 토지·건물 등을 생산수단으로 다루어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한계이다.

V. 결론

이상에서 2024년 북한 민법의 물건 규정에 대해서 물건 일반(물건의 요건 및 생산수단과 소비품),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와 강학상의 분류(특정물과 종류물, 가분물과 불가분물, 유통물과 불유통물 등)를 기준으로 개정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종래와 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국가경제계획실현에 따른 사회주의법계의 성격을 띠면서도 외형상 개정

전 민법에 비해 2.2배 많은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⁴⁵⁾ 새로이 신설되거나 수정된 규정들은 대부분 이념적 요소보다는 민사관계에 대한 법기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북한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종래 모든 북한법에서 나타나는 주체사상에 따른 전거주의(典據主義)⁴⁶⁾의 태도(김운용, 1974; 최달근, 1998)가 완화될 것을 추론케 하며, 이는 개정 민법상 물건에 관한 규정의 특징과 평가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물건 일반과 관련하여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저당권 등 물적 담보를 명시하면서 저당물 등을 표기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개정 민법은 개정 전에 비해 ‘재산’이라는 표기보다는 ‘물건’이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 물권의 객체가 원칙적으로 물건이고, 물건 이외의 재화에 대해 재산으로 표기하는 입법 방향을 예측하게 하며,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 민법과 같이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분류하여 사회주의적 소유의 특별보호의 원칙에 따라 여전히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나누는 개정 민법의 규정(제2조, 제116조, 제127조, 제133조)과 이에 바탕을 둔 매매·임대의 목적물과 당사자를 나누는 관련 규정(제266조, 제340조-제342조)들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45) 2024년 북한 개정 민법은 개정 민법이 4개 편 27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4개 편 596개 조문의 본칙(本則)과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제597조의 부칙(附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46) 북한의 법률체계 연구에 있어서 계획경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구소련 등의 사회주의 법제와 다른 점은 김일성과 김정일 등 수령 개인에 대한 숭배·우상화를 부가하는 것이며(김운용, “북한 헌법 질서의 이론과 실제”, 『북한법률체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p. 84), 이는 북한의 모든 법제에서 전거주의를 통해 나타난다. 북한 민법의 해석상 전거주의(典據主義)는 민법상 법률문제나 법이론의 전개를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비속한 말을 유도어(誘導語)로 의존하여 법리를 설명해 나가는 태도를 지칭한다(최달근, 『북한 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p. 9).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80조 제2항, 제353조)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물의 수익권을 명시하는 것,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서 비롯된 과실의 귀속을 명시하는 것, 선박 등의 의제부동산을 명시하는 것은 우리 민법(제100조, 제323조, 제343조, 제358조, 제618조)의 태도와 같은 것으로서 남북한 민사법제의 접근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126조)이 우리 민법(제252조)과 달리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무주물에 대해서 국가귀속을 규정하는 것, 유치물을 동산에 한정하는 것 등은 남북한 민법상 접근의 한계점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위 규정들을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강학상의 분류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18조, 제520조, 제151조 제3항)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특수한 물건인 화폐와 관련해서 보증금인 담보금에 대해서 정의규정을 명시하고 담보금계약의 성격을 요물계약으로 명시하는 것, 불가분물을 대상으로 한 채무인 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몫)에 대해 평등을 명시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통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36조-제449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화폐와 관련해서 공민의 유희자금을 대상으로 주민자금 동원 이용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도입한 것은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개인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위 계약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2018).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22.
- 김영규 (2008). 최근 북한 민법의 변모와 그 특색-민법총칙과 채권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9, 한국법학회, 167, 169-177.
- 김영규 (2018). 북한 민법상 물건. 통일과 법률, 36, 법무부, 18, 19.
- 김영규 (2019). 북한 부동산거래법의 변모과정과 향후 추이. 부동산분석, 5(2), 한국감정원, 116, 117.
- 김영규 (2020). 부동산사법(제5판). 부연사, 543.
- 김영규·이재웅 (2025).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특징과 평가. 미래사회.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16(1), 117-132.
- 김운용 (1973). 북한 헌법 질서의 이론과 실제. 북한 법률체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84.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1973). 민법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2005). 공화국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32, 116, 117, 118.
- 백영훈, 민사법률관계 대상으로서의 물건의 분류.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력사 법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3(1), 104, 105, 106, 107, 108.
- 법무부 편 (2016). 남북 법률용어 비교자료집. 법무부, 142.
- 법무부 편 (2015). 북한 민법 주석. 법무부, 424, 609, 627, 723, 750, 758.
- 법률출판사 편 (2007). 조선투자법 안내(310가지 물음과 대답). 법률출판사, 245.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1997).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89, 405, 515-516, 804.
- 송덕수 (2020). 채권법각론(제4판). 박영사, 276.
- 양형우 (2022). 민법의 세계(제13판). 도서출판 정독, 1380-1381.

- 윤중철 (2012). 민법학(법률대학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71, 72, 73-76, 201.
- 최달곤 (2018).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6.
- 한철룡 (2013). 물권의 본질과 특징, 사회계급적 성격.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력사 법학, 김일성종합대학교출판사, 2013(1), 117.
- 한철룡 (2015). 외국물권제도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1-17.
- Братусь С.Н., Садиков О.Н.(1982). *К о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Москва, § 92, par. 7, § 93, par 2, § 105, par 2.

투고일자: 2025. 4. 29.

심사일자: 2025. 6. 2.

게재확정일자: 2025. 6. 4.

The Traits and Evaluation of The Thing Provisions of The Amendment North Korean Civil Law in 2024

Youngkyu Kim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and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ng provisions” in the 2024 amendment to the North Korean Civil Law by analyzing their compatibility with a unified civil law framework and any limitations. The amended North Korean Civil Law introduced notable changes, including the more frequent use of such terms as “things” compared to the previous version and the inclusion of mortgaged property, which aligns with the principles of unified civil law.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means of production and consumer goods, which contradicts the concept of private property, should be abolished through transitional regulations under unified civil law. The amendment also outline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s of lessors and persons with a right of retention, offering potential scope for integration with unified civil law. However, other provisions, such as the state’s claim over all ownerless property and the limitation of retained items on movable goods, should be abolished through transitional regulations. Additionally, the new provisions regarding security money and indivisible goods align with existing legal principles but the introduction of resident fund mobilization contracts should be abolished by through transitional regulations within unified civil law.

Keywords: North Korean Civil Law, unified civil law, things, means of production, consumer goods, immovables, movables, principal thing, accessory, fruits, transitional regulations.